

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사 운영 규정

제정 2019. 3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순천대학교 학칙」 제79조에 따라 미래융합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(이하 “이 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위과정에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 등 제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수업연한·재학연한)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,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②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③ 모집단위간 이동·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(학기)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모집단위간 이동) ① 모집단위간 이동은 계열 구분 없이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허용된다.

② 모집단위간 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35조 및 교학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른다.

제5조(학년도·학기) ① 학년 및 학기는 순천대학교 학칙을 준용하되, 특별학기는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으로 한다.

② 특별학기에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학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특별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교과목 분류) ① 교육과정은 교양, 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.

② 교양교과의 학점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전공교과는 학과에서 학문적 능력과 4차 산업혁명 등 관련된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로 편성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수행 또는 교육과정 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교과이수) ① 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 이 대학의 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·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그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교과교육 특별지도) ① 학사경고 기준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이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별도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수강신청 기준학점) ① 1학기 및 2학기의 최대 수강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, 특별학기의 최대 수강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기 또는 2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.7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1학기 또는 2학기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
③ 학생의 1학기 및 2학기의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.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학생은 예외로 한다.

제10조(다른 단과대학 학생의 수강신청) ① 다른 단과대학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이 대학에서 개설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이 대학의 학생이 우선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단과대학 학생과 이 대학 학생의 평가단위를 다르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분류하며, Do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

한다. 다만, 실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교과목의 학업성적의 등급은 P·S 또는 F·U로 한다.

② 학업성적의 평가는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A⁺이상 성적부여는 30% 이하로 한다.

제12조(다른 기관·과정의 취득학점 인정) ① 본교의 다른 단과대학 및 이 대학의 다른 학과, 국내외 다른 대학, 평생교육시설, 교내외 학점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(해당 학과를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의 다른 단과대학 및 이 대학의 다른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: 졸업소요학점의 50% 이내
2.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: 졸업소요학점의 50% 이내
3. 다른 기관 학위과정의 집합교육에서 취득한 학점: 졸업소요학점의 10% 이내
4. 입학 전·후에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 : 졸업소요학점의 10% 이내
5.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: 순천대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졸업소요 학점의 10% 이내
6. 군입대 휴학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: 학기당 6학점(연 12학점 이내)

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학점인정 여부는 본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
제13조(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) 학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외부시험 성적을 특정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을 인정하는 교과목과 외부시험 성적기준 및 인정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.

제14조(K-MOOC 학점인정) ① 이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장이 승인하여 이수한 K-MOOC 교과목의 학점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이 표기된 담당교수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) ① 이 대학의 학생은 선행경험학습인정(RPL)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이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평일 주간 외 수업 운영) 평일 야간수업의 시간 단위는 45분으로 1일 최대 6시간까지 하고, 토요일 혹은 일요일 주간수업의 시간 단위는 45분으로 1일 최대 10시간까지 한다.

구 분	1교시	2교시	3교시	4교시	5교시	6교시
평일	18:00~18:4	18:50~19:3	19:40~20:2	20:30~21:1	21:20~22:0	22:10~22:5
야간수업	5	5	5	5	5	5

제17조(수업방법) 수업은 출석수업, 원격수업 또는 양자를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18조(수업시간) ① 수업시간표 편성시 교과목별, 교수별 수업시간은 균형있게 배정한다.

② 교과목 특성에 따라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집중·자유선택이수) ① 이 대학 학생이 학업전념 목적의 집중적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다른 단과대학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(학점당 15시간 이상)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원격수업) ① 고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(이하 “원격수업”이라 한다.)을 진행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에 관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(평가 활동 제외) 시수의 70% 이상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

2. 중간-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

③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④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(학과)의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⑤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및 순천대학교 사이버강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.

제21조(학업이수능력평가) ① 신입생의 학업능력을 파악하고, 학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초역량 함양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학업이수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대학은 과목별 점수가 기준 미달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.

③ 제3항에서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업이수능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2조(졸업요건 및 심사기준)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 및 교양의 이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교과는 70학점 이상

2. 교양교과는 25학점~37학점

② 졸업심사는 교학규정 제64조의 2에 따라 120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.

1. 졸업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

2. 교양 및 전공 이수 여부

3.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

4.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

제23조(조기졸업) ① 학칙 제56조에 따라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.25이상인 사람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6학기 또는 7학기에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, 특별학기는 조기졸업 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.

1. 학칙 제32조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

2.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
제24조(등록금) 등록금은 학점단위로 한다.

제25조(장학금 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1개 학기로 하되 매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특별학기는 본교 대학회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기간에서 제외한다.

제26조(장학금 지급기준) ①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1학기 성적에 따라 같은 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2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2학기 성적에 따라 다음 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이 밖에 국책사업 지침에 따라 이 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준용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<2019. 3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5조 및 제7조제2항의 학생설계전공, 제15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4조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부터 적용한다.